

##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

- ▶ 본 조례 개정안 1997년 3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 ■ 提案事由

- 육교를 이용한 각종 홍보물의 적절한 활용과 육교시설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### ■ 主要骨子

- 육교 이용 홍보물 설치, 절차, 방법, 제한 등의 적정을 기하고
-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 재정수입 증대 : 표시면적 1㎡당 1일 200원
- 제5조(허가범위) 문화, 예술, 대규모 종교행사, 체육진흥과 산업발전 행사등 특별히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### ■ 關聯根據

- 육교홍보물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준칙(안)
- 지방자치법 제127조, 130조
-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1항11호
-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
- 도로법 제40조
-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9조

■ 檢討意見

○ 본 조례안은 육교를 이용한 각종 홍보물의 대민활용도 제고와 불법홍보물 난립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서울특별시에서는 '91. 6월부터 시행된 후 광주광역시 준칙안으로서('96. 2. 16) 제출된 것으로

○ 다만 본 조례 제정에 있어 법규해석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

- 먼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해석에 있어 동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1항11호에 의하면 육교는 광고물표시 금지지역 및 장소에 해당됩니다.

- 그러나 동법제8조(적용배제)에 의하면

①다른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이나

②국가 등의 공공목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적용 배제되도록 되어 있어 동법 제4조와 동법 제8조에 의한 본 조례 설치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습니다.

- 다만 제8조의 해석에 있어 “국가 등의 공공목적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(공공법인포함) 스스로 주체가 되어 국민이나 자치주민에게 주복지등 공익을 위하여 알리는 홍보(광고)에 한정 해석하여 보면, 국가 등의 공공목적으로 표시하는 홍보(광고)는 사용료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본 조례의 제정의미가 없습니다.

- 그러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체육, 문화, 예술행사등 비영리목적에 위한 내용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'95. 3. 31자 내무부 회신과 본 조례 제5조(허가범위)에서 정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



- 다음으로 '97. 4. 1자 내무부 다른 회신에 의하면 “교량, 축대, 육교, 고가도로 및 삭도”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
  - 시·도 조례에서 육교 등을 공공시설물로 정하고 있으면 육교에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광주광역시에서는 육교를 공공시설물로 지정한 내용이 없으며
  -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9조와(권한위임사항) 관련된 내용 별표5를 보면 국가 등의 공공의 목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지역, 장소, 물건에 표시한 광고물의 협의는 광주광역시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”
-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육교시설유지관리와 홍보물 설치에 적정을 기하도록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재원 확충과 육교시설물을 합리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께서 본조례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신후 처리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